

# 2020년도 임금 협약서

2020. 12.

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

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노동조합

# 전 문

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(이하 '진흥재단'이라 한다)과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노동조합(이하 '조합'이라 한다)은 본 임금협약을 체결하며 쌍방의 신의와 성실로써 엄정히 준수·이행할 것을 확약한다.

## 제1장 총 칙

**제1조(적용범위)** 이 협약은 진흥재단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조합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다.

## 제2장 임 금

**제2조(임금의 원칙)** ① 진흥재단은 제1조에 따른 임금은 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.

② 임금 및 노동조건에 관한 제 규정과 방침을 ~~제정~~ 또는 개정할 경우 협의하여야 한다.



**제3조(임금인상)** 조합원의 임금인상은 매년 임금협약 또는 단체교섭을 통하여 결정하며, 타결시점과 무관하게 매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한다.

**제4조(2020년도 임금인상)** ① 진흥재단은 조합원의 연봉에서 직급별 차등인상 비율(책임급 2.0% 선임급 2.8%, 원급 3.45%, 사무직 2.8%)을 적용하여 지급한다. 단, 2020년 7월 1일자 승진·승급자의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임금은 직급별 차등인상에 따른 인상분을 소급하여 적용하고 2020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임금은 승진·승급요령에 따른 인상률을 적용한다.

② 임금인상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.

가. 임금은 기본연봉, 성과연봉, 연봉 외 급여로 구분한다.

나. 기본연봉과 연동되는 항목은 성과연봉, 성과인센티브, 시간 외 근무수당 등으로 한다.

③ 임금총액 대비 성과인센티브 비중은 제반규정을 고려하여 정한다.

④ 수당은 전년수준보다 저하되지 않게 한다.

**제5조(기타 복리후생)** 기타 복리후생 관련 사항은 전년도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급하되, 가용 재원이 확보된 경우 진흥재단은 이를 복리후생 및 처우개선에 사용한다.

## 부 칙

**제1조(명칭변경)** 이 협약은 진홍재단 및 조합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었을 때에도 유효하다.

**제2조(유효기간)** ① 이 협약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를 유효기간으로 한다.

② 이 협약의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 새로운 협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에 1항의 유효기간에도 불구하고 효력은 유지된다.

**제3조(협약의 보관)** 이 협약을 증거하기 위해 3부를 작성하여 진홍재단과 조합이 각 1부씩 보관하고, 1부는 행정관청에 신고한다.

**제4조(불이행 책임)** 이 협약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불이행 당사자가 진다.

**제5조(관계법령의 준용)** 이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노동조건은 제반 노동관계 법령 등에 따른다.

위의 사실을 확인하고 아래와 같이 서명함.

2020. 12.

연구개발특구진홍재단

이 사장

양 성 광

연구개발특구진홍재단 노동조합

위 원 장

이 희 옥



A handwritten signature in black ink, appearing to read '이희옥'.